법 화 천 하 천 기 본 계 획 (재 수 립) 에 따 른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2022. 07.

충 청 북 도

제1장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사업추진 및 원활한 유지관리, 하천의 일관된 개발계획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법화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으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시기는 [표 1.2-1]과 같다.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대상사업 및 협의요청시기
사업추진근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
대 상 사 업	2. 개발기본계획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1.3 계획의 추진경위

- 2022. 04. : 법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2. 06. : 평가준비서 제출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2022. 0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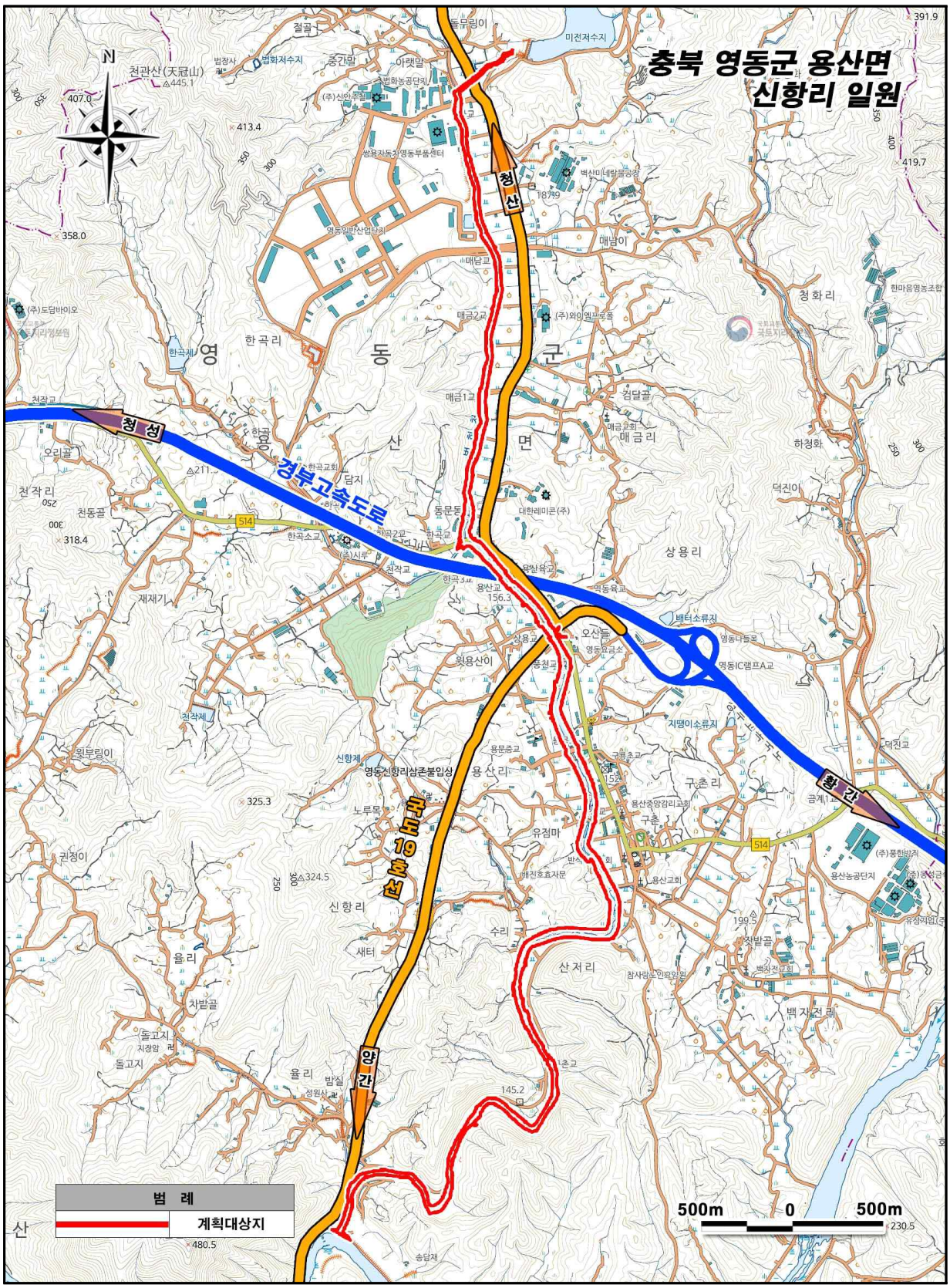

[그림 1.2-1] 계획대상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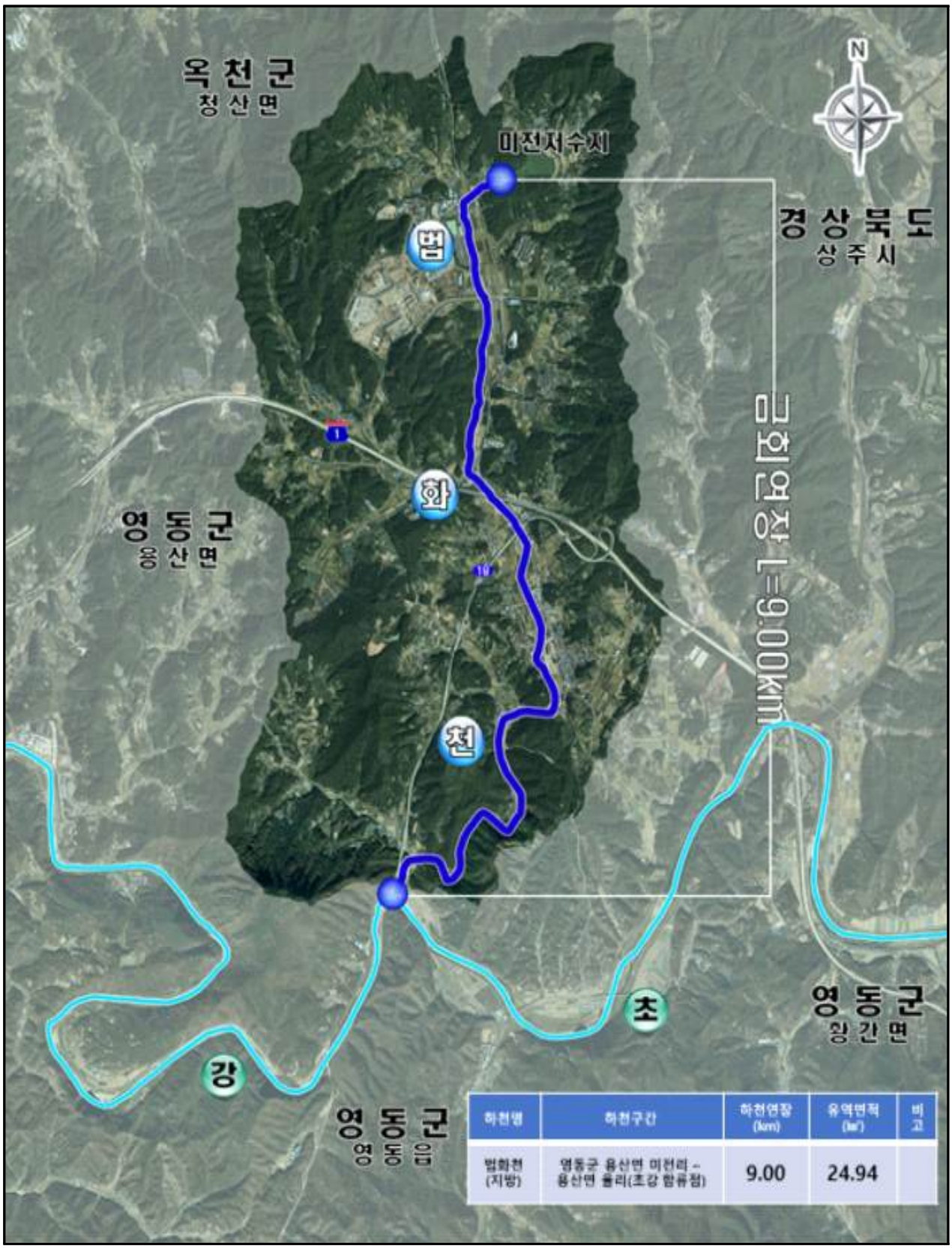

[그림 1.2-2] 계획대상지 위성사진

1.4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법화천 하천기본계획

나. 계획의 범위

- 위치 : 시점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미전리
  종점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율리(초강 합류점)
- 연장 : 약 9.00㎞

다. 목표년도

- 2023년 이후

라. 계획수립권자

- 충청북도

마. 계획의 내용

- 법화천은 2005년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으로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 상태의 하천현황을 제시하였다.

[표 1.4-1] 하천현황

하천명	하천연장				유로연장 (km)	유역면적 (㎢)	하천지정근거 및 일자
	계 (km)	하천기본계획					
		수립구간		미수립구간 (km)			
		고시일	연장(km)				
법화천	9.00	2005.01.14	9.00	–	10.53	25.06	충북111호 (1965.12.29)

자료 : 한국하천일람, 2020.12.31. 기준, 국토교통부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2.1.1 협의회 구성

연번	직 책	소 속	직 위	성 명	전문분야
1	위원장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과 장	강 종 근	하 천
2	위 원	충청북도 하천계획팀	팀 장	지 영 훈	하 천
3	위 원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주무관	김 설 아	환 경
4	위 원	영동군 안전관리과	팀 장	이 방 열	하 천
5	위 원	금강유역환경청	주무관	김 소 연	환 경
6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김 유 미	환 경
7	위 원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교 수	주 진 희	환 경
8	위 원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 수	정 문 선	환 경
9	위 원	주민대표(법화리 이장)	대 표	정 윤 영	지역주민
10	위 원	주민대표(구촌1리 이장)	대 표	유 철 민	지역주민
11	위 원	주민대표(구촌2리 이장)	대 표	신 동 한	지역주민
12	위 원	주민대표(율1리 이장)	대 표	권 용 하	지역주민

2.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법화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획일적인 범위보다는 사업지역 인근 지역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이 포함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상지역이 설정되도록 하여야 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 본 준비서의 환경보전 목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 본 보고서에 제시된 평가대상지의 설정을 준수하여 함

3. 토지이용 구상안(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 : 동의(√), 수정의견( )

○ 지형적, 생태적 특성을 파악한 후 토지이용구상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안을 제시하여야 함.

4. 대안의 설정 : 동의(√), 수정의견( )

○ 계획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설정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형변화 등에 대한 친환경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의(√), 수정의견( )

○ 제시된 평가항목 및 범위는 향후 개발 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개발기본계획만 해당) : 동의(√), 수정의견( )

○ 영향권역 내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여져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야 함

7. 기 타

○ 사업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변환경 변화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함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2022. 7. 13.

심의위원 : 지 영 훈 (서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법화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이·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나친 인공화는 지양하고 본래의 자연생태계를 보전·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하천생태조사 결과 자연도가 높은 구간은 가능한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존하천의 선형 변화 최소화, 구간별 하천생태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수립과 자연친화적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살리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하천 하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해당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동의 (√), 수정의견( )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사업 계획지역 환경 현황 및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 수정의견( )

○ 평가대상지원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설정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내용·관련자료 등을 명시하는 등 사용근거와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
○ 하류 합류점, 지류 소하천과의 연계성(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 설정
○ 지형·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수리·수문 등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설정

3. 토지이용 구상안(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 : 동의 (√), 수정의견( )

○ 하천 본래의 유로, 하폭 및 하상을 최대한 보전하고, 수리·수문 분석 및 제내지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계획 수립
○ 생태·경관 환경이 우수한 지역 통과, 인접구간 내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위적 구간은 자연성을 복원하는 방안 강구
○ 계획 시행 시 사업지역의 지형 및 수생태계 등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호안 조성 시 법면 완경사 조성, 친환경적 공법 적용 등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함.

4. 대안의 설정 : 동의 (√), 수정의견( )

○ 3개 이상의 대안(No action 포함)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의 (√), 수정의견( )

○ 평가항목은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수질, 수리·수문 등을 고려하여 공사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야 함.
- 강수, 기상, 수해 및 가뭄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고, 하천의 지형·형상 등 생태적 보전가치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 하천의 동수단면적 확보 등의 이·치수적인 측면의 검토를 통한 수리·수문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
- 동·식물상은 문헌조사, 하천구간별 조사(수생태계 포함)를 통한 사업구역 내 법정보호종 출현 및 서식지 분포여부를 조사·제시하고 보전방안 등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 사업시행
-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정온시설(주거지역, 가축사육시설 등)의 분포현황을 도면을 사용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동의 (√), 수정의견( )

○ 사업시행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충분히 설명,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야 함. 특히 하천정비 공사 예정구역의 경우 인접한 마을주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7. 기타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및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 서면심의(√)

2022. 6. .

심의위원 김 설 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법화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하천의 이수·치수·환경 및 친수를 고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동의 (√), 수정의견( )

○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 수정의견( )

○

3. 토지이용 구상안(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 : 동의 ( ), 수정의견(√)

○ 횡단구조물의 과도한 숭상 계획은 오히려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므로 대책이 필요.

4. 대안의 설정 : 동의 (√), 수정의견( )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의 (√), 수정의견( )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동의 (√), 수정의견( )

○

7. 기타

○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

2022. 07. .

심의위원 이 방 열 (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법화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하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 현황(홍수량 분석 등 포함), 관리목표 등을 고려하여 설계빈도 설정, 대안(수요, 방법 등)을 비교하여 개수계획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

○ 하천의 환경기능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상위·관련 계획 및 최근 정비 또는 계획된 사업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상위계획, 기수립 기본계획, 주변 하천의 기본계획,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등은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일치 또는 변경 내용을 분석·제시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동의 ( ), 수정의견(v)

○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저감 및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현재의 하천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하천 상·하류 및 주변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함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 ), 수정의견(v)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최대한 포함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설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자연환경보전관련 지역,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생태자연도, 식생 등 확인)등 하천 주변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조사·예측범위 확대
- 하천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될 경우 취수시설 등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영향이 있을 경우 저감방안 수립

3. 토지이용 구상안(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 : 동의 ( ), 수정의견(v)

○ 현재 토지이용현황, 생태계 특성, 수질 및 수리 생태적 특성과 관리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하천 공관 관리계획 수립·제시

4. 대안의 설정 : 동의 ( ), 수정의견(v)

○ 하천의 이·치수 능력 확보 대안(하천제방, 하도정비 등)을 계획 구간별로 상세히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함

- 아울러, 호안, 보 및 낙차공 등 횡적시설물의 환경적 기능과 재해 예방적 기능을 객관적(수치적)으로 비교하여 대안(철거, 재설치 등)을 제시하고 향후 실시설계 시 구간별 환경적, 수리·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법을 선정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의 ( ), 수정의견(v)

○ 입지에 따른 현황, 사업계획에 따른 항복별 영향 예측 및 저감계획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별표2](자연생태환경 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를 참조하여 동·식물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조사
- 계획하천 내 생태자연도 1등급에 속하는 구간이 존재하므로 1등급으로 지정된 사유를 명시하고,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수질조사는 하천 상·하류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 현황을 파악하고 중권역별 목표 수질과 연계한 수질 목표를 설정해 관리방안 제시
- 대기질 및 소음·진동은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 시설을 면밀히 파악해 지점을 선정
- 사업지구 경관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근·중·원경별로 가시권 분석을 시행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제시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동의 ( ), 수정의견(v)

○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7. 기타

○ 평가서 작성 시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문헌등을 활용할 경우 객관성이 확보된 최신 자료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 서면심의(v)

2022. 7 . .

심의위원 김 소 연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법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총 괄 의 견

○ 본 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법화천(L=9.00km)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계획수립 시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이 갖는 자연성 및 환경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평가서 작성 시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 등을 이용하여 상세히 수록하여야 하며, 구간별 개수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해 필요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불필요한 횡적구조물(보·낙차공)에 대해서는 하천 건강성 및 수생태계 연속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철거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조사결과 및 환경현황을 구간별로 비교·평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홍수방어 대책의 수단·방법,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 세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더불어 관련계획(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과의 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심 의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치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평가서 작성 시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 등을 이용하여 상세히 수록
○ 공간관리계획 수립 필요

3. 대안
○ 계획비교를 위한 대안 평가 시, 계획의 장·단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닌 계획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효과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계획의 유형별(치수, 이수, 환경, 공간관리 계획)로 각각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또한 수단방법 대안의 경우 개수계획과 관련된 단순 공법(축제 및 보축 또는 하상굴착)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설계기준의 수준별로 효과를 비교 검토하여야 함
○ 횡적시설물 및 호안설정 등 수단·방법에 관한 대안평가의 경우에도 하천현황을 고려하여 하천별 혹은 구간별 평가를 시행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에 대해 명확한 공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별 계획에 대해 환경, 생태계,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이치수 효과(장점) 및 항목별 환경영향(단점)을 구체적으로 평가 제시하여 최적의 계획을 도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절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현지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생태자연도1등급지,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이 있을 경우 수변식생, 법정보호종 서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전대책 수립, 보 및 낙차공이 있을 경우 시설의 기능적 현황 검토를 실시하고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및 출현 지점 명기
· 대규모 하중도 및 습지 존재 여부 평가
· 어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보 및 낙차공 현황사진 및 시설물 대비 어도설치 비율 제시
· 유속과 수량이 감소하는 곳에서의 생태적 기법에 대한 수단적 대안 적용가능 대상 시설물 개소수 분석, 제시

○ 수환경의 보전(수질): 수질현황 및 연관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또한 사업으로 인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수환경의 보전(수리수문): 하천설계빈도 상향조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수립 대비 홍수량 변동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개수현황, 홍수이력,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계획을 토대로 치수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이때 설계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 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계획은 지양하여야 함. 제방, 횡적구조물 등 기존 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설계기준에 맞는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현황은 해당 하천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역 및 침수피해지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 주변의 토지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간관리계획에 따른 계획하천 구간별 지구설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대상하천 및 주변지역에 자연환경 관련 보호대상 중 지형·지질과 관련된 대상의 지정 현황, 또한 계획부지 주변에 학술적·문화적·관광적·역사적 또는 자연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을 조사

○ 기상 및 대기질: 본 사업이 추후 실시설계단계에서 별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일 경우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평가항목 제외 가능

○ 토양: 하천저질 오염도 확인 측면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 고려, 하천·호소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의견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7. 1.

심의위원 김유미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법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총 괄 의 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계획 대상지 하류에

○ 분포하고 있어,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수

□ 심 의 의 견 있도록 대안설정을 수립할 것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2. 토지이용 구상안

○

○

3. 대안

○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

○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07. 07.

심의위원 주 진희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법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총 괄 의 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계획시행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실시하고 하천경관에 최소한의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변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도록 함

□ 심 의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p27 본 계획은 '안내천 하천기본계획' 으로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 법화천으로 수정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현장조사의 경우 계절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 조사지점, 조사횟수 등을 제시

○ 평가항목 선정/미선정 사유 비교표 제시

○ 계획 수립에 따른 하천 토양오염 및 토양 유실 등의 영향 평가 필요

○ p36 대기환경기준과의 부합성: 영향예측방법에서 하천정비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발생정도 , 장비이용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 등을 검토

○ p36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조사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조사, 계획수립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여부 및 영향 검토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 의견 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 의견 없음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7 . 6 .

심의위원 정 문 선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법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총 괄 의 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법화리 개천 정비시에 제방공사가 안된

○ 곳이 많아서 홍수시 피해가 심각함

□ 심 의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영동군 용산면 법화리 신개천 제방공사 전

2. 토지이용 구상안

○ 구거천 지적도상 패있는 부분들은

○ 좁은곳은 하여 또한은 전체적으로 넓혀야함

3. 대안

○ 구거천 지적도상 좁은 곳은

○ 보상은 해서 더 확보해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물고기가 서식있게 법화리 개천에

○ 우렁, 꺽붕어, 미꾸라지, 피라미, 가재 등등이 서식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 법화천 최상류 마을의 제방공사가 안된

○ 곳이 많으므로 피해가 심각함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9. 13.

심의위원 성윤영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From: To:0432202459 13/07/2022 12:05 #426 P.001/00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법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총 괄 의 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

□ 심 의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2. 토지이용 구상안

○ 법화천은 본래 하천 정비가 ~~되어~~ 되어있는 곳이 없고 자연 곳이 있는데

○ 정비를 해서 경관을 좀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대안 벚꽃 나무 밑에 포행을 연결한 곳이 있어보이는데 포행 연결을 추가로 해서

○ 벚꽃 구경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 현재 법화천의 양쪽으로 벚꽃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법화천을 중심으로

○ 운동(걷기, 조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설치해서 저녁에나 밤에도 운동 및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

○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7. 13.

[illegible]

심의위원 유현민 (서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15/05 2022 SUN 12:36 PM [TX/RX NO 7778] 000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법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총 괄 의 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의견 없음

□ 심 의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2. 토지이용 구상안
   ○
   ○

3. 대안
   ○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
   ○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9. 13.

심의위원 신 동 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법화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총 괄 의 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 의견 없음.

□ 심 의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2. 토지이용 구상안
   ○
   ○

3. 대안
   ○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
   ○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
   ○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9. 13.

심의위원 [illegible]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3장 대상지역의 설정

3.1 대상지역 설정

[표 3.1-1] 주요 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범위

주요 평가 항목		대상지역 선정 사유	대 상 지 역	
			직접영향권역	간접영향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동 · 식물상 변화	계획하천	계획하천 경계에서 약 500m 이내 지역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	계획하천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및 영향	계획하천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 하천수질 현황 및 영향	계획하천 및 주요수계	-
생활환경의 안전성	대기환경 기준과의 부합성	■ 대기질 현황 및 영향	계획하천	계획하천 경계에서 약 500m 이내 지역
	소음·진동 기준과의 부합성	■ 소음 · 진동 현황 및 영향	계획하천	계획하천 경계에서 약 500m 이내 지역
	자원 ·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	계획하천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변화	계획하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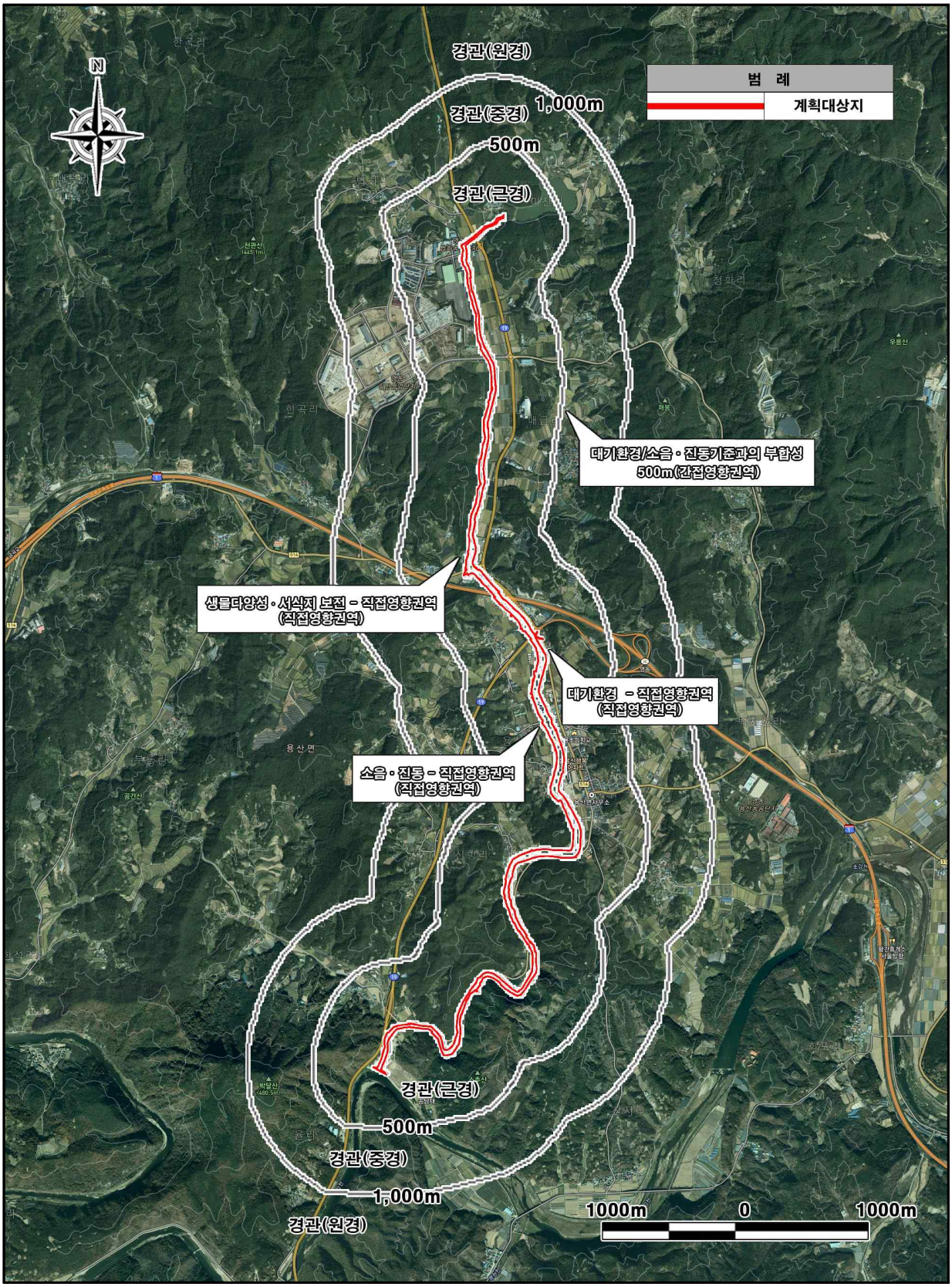

[그림 3.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도

3.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설정

- 평가항목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2021. 12. 30)”을 준용하여, 주요평가항목을 계획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표 3.2-1] 평가항목 설정 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 정 사 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동 · 식물상 변화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및 영향
	수환경의 보전	■ 공사 시 우수 및 토사유출, 오수발생 ■ 하천 목표수질 수립
생활환경의 안정성	대기환경 기준과의 부합성	■ 공사 시 토공작업, 장비운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소음 · 진동 기준과의 부합성	■ 공사 시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 진동 발생
	자원 ·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 시 장비 및 작업인부에 의한 폐유 및 분뇨, 폐기물 발생
사회 ·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변화

3.3 조사·예측·평가 방법

3.3.1 조사·예측의 방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다음 표와 같으며, 조사는 기존자료(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학술지 및 논문 등)를 활용하되, 계획대상지에 대한 환경현황을 파악하고자 환경질 현황 및 동·식물상은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 영향예측은 조사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과업의 실시로 인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 영향예측 결과, 주변지역에 악영향이 예측될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표 3.3.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영향예측 방법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① 조사내용 : 자연현황(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주변영향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지형 및 생태축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형현황 등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지형의 변화 예측 ■ 문헌조사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 위락시설 현황 및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 계획시행 전·후 경관변화 예측
	수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 하천수질 현황농도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③ 조사방법 : 기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수계 및 오염원 현황 ■ 하천수질 현황 및 영향예측

[표 3.3.1-1] 계 속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영향예측 방법
생활 환경의 안정성	대기환경 기준과의 부합성	① 조사내용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대기 현황농도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소음진동 기준과의 부합성	① 조사내용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소음·진동도 및 주요 발생원 조사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그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공사 시 소음 · 진동 영향예측 - 피해예상지점에 대한 소음 · 진동 영향분석(점음원 거리감쇠식, 합성 소음도 산출식, 진동레벨의 거리 감쇠식 등)
	자원 ·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문헌자료 조사	■ 환경부 통계자료 및 기타 참고 문헌을 통한 발생 원단위를 적용하여 계획 시행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예측
사회 ·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 경 친화적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토지이용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 전 · 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파악

3.4 대 안

3.4.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한다.
- 본 평가에서는 계획비교 대안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표 3.4.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계획비교	o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o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o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 지	o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o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타	o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3.5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3.5.1 의견수렴 계획

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이다.

나. 평가서 초안 공고

▪ 본 계획대상지가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충청북도)의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주민 등이 공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공휴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평가서 초안 공람

▪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게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충청북도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공람장소는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라.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평가서(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초안) 공람기간 중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단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의 생략)에 따라 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계획이다.
  -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마.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이다.